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에
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소상공인단체 등에 재심의 청구절차 도입, 「행정기본법」과 정합성·형평성을 위해 대기업등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194호, 2026. 12. 2. 공포, 2026. 6.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 청구절차 구체화,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및 심의·의결 결과 통보 방법, 이행강제금 인용조항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안 제6조 제7항 개정)
- 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보 (안 제7조 제6항 개정)
- 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 청구절차 등 구체화 (안 제10조의2 신설)
- 라. 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안 제10조의3 조문이동, 안 제12조제2항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 2명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의 주요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우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소상공인단체와 관계되는 대기업등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 통보의 효력은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심의요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 사실 등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할 명백한 이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요한 사항의 누락, 오류 등으로 심의위원회 의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심의 의결과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위원 또는 제5조에 의하여 기피 결정된 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한 경우

3. 심의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발생한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심의 청구가 제10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가 당초의 심의·의결 결과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10조제5항”을 “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재심의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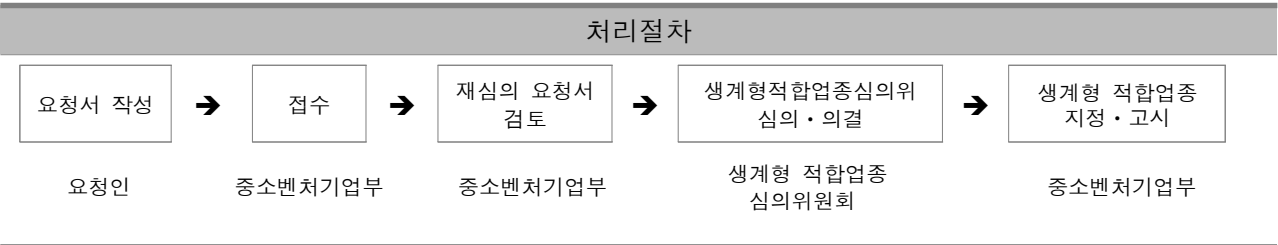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요청인	단체명(대표자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실무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요청사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2. 그 밖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재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⑥ (생략) ⑦ <u>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u> 1. <u>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및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u> 2. <u>공개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u> 3. <u>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u> ⑧ ~ ⑩ (생략)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 2명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의 주요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u>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

청 및 추천) ① ~ ⑤ (생략)

<신설>

<신설>

청 및 추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우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소상공인단체와 관계되는 대기업등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 통보의 효력은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의2(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심의요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 사실 등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할 명백한 이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요한 사항의 누락, 오류 등

	<u>으로 심의위원회 의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u> 2. <u>심의 의결과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위원 또는 제5조에 의하여 기피 결정된 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한 경우</u> 3. <u>심의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발생한 경우</u> ③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심의 청구가 제10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u> ④ <u>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을 하는 심의위원회가 당초의 심의·의결 결과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u>
<u>제10조의2</u> (생략)	<u>제10조의3</u> (현행 제10조의2와 같음)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① (생략)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지받은 대기업</u> <u>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u>	② <u>법 제10조제4항</u> ----- ----- -----

부터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생략)	----- -----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	
연 락 처	(044) 204 - 7934